안양대학교 학칙

제정 1991. 3. 1. 개정 2022. 5.10.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우리 대학교는 기독교정신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지혜와 미래 사회를 열어갈 진리를 탐구하고, 지식정보화·고도기술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창조성·다양성·복합성·도덕성을 함양하기 위한 실천적 응용방법을 연구·교수하며, 전인교육을 통한 민주시민의 역량을 바탕으로 한구석을 밝혀 지역사회와 국가 그리고 인류공영에 봉사하는 아름다운 리더를 육성한다.

제2조(면제) ①본 대학교는 대학으로서 신학대학, 인문대학, 예술체육대학, 사회과학대학, 창의융합대학, 아리교양대학을 두고, 일반대학원으로서 대학원과, 특수대학원으로서는 신학대학원, 교육대학원, 경영행정대학원, 글로벌대학원을 둔다.[개정 2011. 7. 1][개정 2012. 3. 1][개정 2016.5.30.][개정 2019. 2.20.][개정 2022. 1.26.]

②각 대학[학부(과)]의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 7. 1.][개정 2012. 3. 1.] [개정 2012. 8. 27][개정 2013. 6. 11][개정 2013.10.17][개정 2014. 4.11][개정 2016. 5.30.][개정 2017.1.23.][개정 2019.2.20.][개정 2020. 5.14.][개정 2021. 2.25.][개정 2021.04.27.]

제2조의2(정원연동제) 학부(과)평가를 통해 학부(과)정원연동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6, 5.30]

제 2 장 수업년한과 재학년한

제3조(수업년한) 본교의 수업년한은 4년(8학기)으로 하고, 학생의 능력이 특히 우수한 자는 수업년한을 6학기, 7학기로 단축할 수 있다.

제4조(재학년한) ①재학년한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 3 장 학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5조(학년·학기) ①학년은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하고, 학기는 다음과 같이 나눈다.[개정 2017. 5. 15]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2학기 : 9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

유연학기 : 학칙 제33조(이수단위)기준안에서 수업기간을 단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

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7. 5. 15] [개정 2020. 5.14.]

단, 2학기 수업의 시작은 2주를 경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급할 수 있으며, 소급한 수업일 수는 학기 15주의 범주에 포함한다. 이 경우 제 1학기는 소급일 전일까지로 한다.

②전항 이외의 동계와 하계의 계절수업을 둘 수 있다.[개정 2017. 5. 15]

제6조(수업일수) ①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 이상(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 ②천재지변 기타 교내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2주 이내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개정 2009. 3. 1]
- ③휴업일의 경우 보강일을 지정하여 운영한다.[신설 2019. 2.20]

제7조(휴업일)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 1. 법정 공휴일
- 2. 하계방학
- 3. 동계방학
- 4. 개교기념일(9월 17일) [신설 2013.12.30]

제8조(임시휴업) ①입학생전형, 학위수여, 기타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으며, 임시휴업 및 방학기간의 변경은 필요에 따라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②휴업일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좌를 개설하거나 실험 또는 실습 등을 과할 수 있다.

제 4 장 입학(편입학, 재입학 포함) 및 등록

제9조(입학시기)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입학은 학기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4.11. 3]

- 1. 재입학[신설 2014.11. 3]
- 2. 편입학[신설 2014.11. 3]
- 3.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의 입학[신설 2014.11. 3]
- 4.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의 입학[신설 2014.11. 3]

제10조(입학자격) 본 대학교 제 1학년에 입학을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 1.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2.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3.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 4. 법령에 의하여 전 각호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11조(입학전형)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은 매 학년도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모집요강에 따른다.[개정 2012. 3. 1][개정 2020. 5.14.]

제12조(제출서류) 입학 지원자는 입학원서에 다음 서류와 소정의 수험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필요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2. 기타 지정한 서류

제13조(재입학) ①재입학은 계열별 학생정원을 포함한 학생정원("총 정원")의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교원 및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의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거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허가한다.[개정 2019, 2,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학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집단위별로 허가한다. 다만 재입학을 허가하고자 하는 모집단위가 폐지된 경우에는 총장이 정하는 모집단위에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9. 2.2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 정원은 주간과 야간, 본교와 캠퍼스 및 정원의 내외로 구분한다.[개정 2021, 2.25.]

④기타 재입학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4조(편입학자격) 본 대학교에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 1. 제 3학년은 대학교 제 2학년 수료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2.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 3. 학사학위를 가진 자는 입학정원 외로 제 3학년에 편입학할 수 있다.
- 4. 전적 대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편입학할 수 없다. 다만, 퇴학, 제적의 사유 및 재적시의 성적, 품행을 참작하여 허가할 수 있다.
- 5.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정원외로 2학년 또는 3학년에 편입할 수 있다.[신설 2022. 1.26.] **제15조의 1(정원 외 입학)** 정원 외 입학은 관련법령에 의거 본 대학교의 해당 학년도 입학요강에 따른다.

제15조의 2(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등의 설치·운영) ①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직업교육훈련과정 및 학부, 학과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그 소속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 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②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6조(보증인) ①보증인은 학생의 부형 또는 기타인으로 학생의 재학 중 학비, 기타 신상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로 정하여야 한다.

②[삭제 2017. 1.23.]

제17조(입학허가 및 취소) ①입학은 총장이 허가하며,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 기일 내에 절차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6.11.9.]

②입학을 허가한 학생이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는 입학을 취소하며 제출한 서류와 입학금 및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신설 2016.11. 9][개정 2021. 2.25]

- 1. 지원 자격을 위반한 경우
- 2. 지원자의 귀책사유로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각종 증명서 등 전형자료에 허위 사실 또는 기재 금지사항이 포함된 경우
- 3. 평가자 사전 접촉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과정에 참여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

선발업무를 방해한 경우

- 4.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개정 2021. 2.25.]
- 5.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한 경우[신설 2021. 2.25.]
- 6. 그 밖의 입학전형에서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다른 응시자에게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 주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신설 2021. 2.25.]
- 7. 기타 입학 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 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합격한 경우[신설 2021, 2.25.]
- **제18조(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조명 변경 2020. 5.14.] 본교 입학전형의 공정관리를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둔다.[개정 2020. 5.14.]
- 제19조(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 구성) [조명 변경 2020. 5.14.] 본교 입학공정관리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두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구성 임무 및 운영 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0. 5.14.]
- **제20조(등록)** ①본 대학교의 학생은 매학기 초 소정 기일 내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만약 이유 없이 적기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적한다.
- ②등록의 절차는 수강신청과 소정의 등록금의 납부로서 완료한다.

제 5 장 전부.전과 및 전공배정

- **제21조(전부.전과)** ①전부·전과는 1회에 한하며, 학부(과)별 및 계열별로 입학정원의 일정 범위 내에서 2학년 또는 3학년에 한하여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②전부·전과는 무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③전부·전과한 자의 재학년한은 종전의 재학년한을 통산한다.
- ④전부·전과한 자는 기득학점 여하에 불구하고 해당학부(과) 소정의 전공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 (5)기득학점 중 해당학부(과) 과목과 유사공통되는 과목은 인정할 수 있다.
- ⑥전부·전과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22조(전공배정)** ①학부에 입학하여 제 1학년 과정을 이수한 자는 반드시 소속학부 내에서 소 정의 절차를 거쳐 제 1전공을 배정받아야 한다.
- ②전공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6 장 휴학, 복학, 퇴학, 유급, 상벌

- **제23조(휴학)** ①4주이상 등교할 수 없을 때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다만, 질병, 창업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야 하며, 1년 이내에서 그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1. 11. 1][개정 2014.11. 3][개정 2015. 9. 7]
- ②휴학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되 휴학기간은 재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휴학기간

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 중 3회를 초과 할 수 없다. 단, 경제사정 또는 질병 등 천재 지변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을 수 없다고 판명되는 경우 지도휴학을 통해 허가 할 수 있다.[개정 2012. 3. 1]

③병역 및 질병, 지도휴학, 육아휴학, 창업휴학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창업 또는 창업준비를 사유로 하는 휴학은 통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1.11. 1][개정 2012. 3.1][개정 2013.12.30][개정 2014.11. 3]

제24조(복학) ①휴학한 자는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②휴학기간 만료 전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할 수 있다.

제25조(자퇴) 학생 중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26조(징계처분) 총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사유가 있는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수 있다.

-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점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 2. 학력이 열등하여 진보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 3.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빈번한 자
- 4. 수업 및 기타 학내질서를 심히 문란케한 자
- 5. 기타 학칙에 위반된 자
- 6.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7조(징계의 종류) ①징계는 근신, 정학, 퇴학으로 구분한다.

②전조의 1호, 2호, 3호, 4호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총장은 교수회의를 거치지 않고 퇴학을 명할 수 있다.

③전조 5호, 기타 사항의 징계는 교수회의 또는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행한다.

제28조(당연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총장이 이를 제적한다.

- 1.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로 등록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 2. 매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 3. [삭제 2020. 5.14]
- 4. 성적경고를 통산하여 4회 받은 자[개정 2011.11. 1]
- 5. 본 대학에 기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변조된 사실이 발견된 자
- 6.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학업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29조(성적경고) ①매학기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1.5 미만인 자와 4과목 이상이 F인 자에 대하여 성적경고를 한다.[개정 2011. 11. 1]

- ②제 1항에 의해 성적경고를 부과한 경우 이 사실을 본인 및 보증인과 소속학부(과)장 및 지도 교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성적경고를 받은 학생은 소속학부(과)장 및 지도교수의 특별 지도를 받는다.[개정 2016. 11. 9] ④9학기 이상 등록자는 성적경고 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19. 2.20]
- **제30조(유급)** ①학년별 수료 대상자중 학업성취가 가능한 자에게 학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재학기 간 중 1회에 한하여 1년간 유급시킬 수 있다.
- ②유급된 자가 다시 유급에 해당될 때에는 제적한다.

③[삭제 2019. 2.20]

제31조(표창) 총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표창한다.

- 1.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서 수석으로 졸업한 자
- 2. 졸업하는 자로서 재학 시 품행이 방정하고 학교에 특별한 공을 세운 자

제 7 장 교과, 이수, 성적, 졸업

제1절 교과과정

- **제32조(교육과정 및 수업시간표)**[조명 변경 2020. 5.14.] ①교육과정은 교양과목, 교직과목, 전 공과목으로 구분한다.[개정 2019. 2.20]
- ②매학기의 교육과정은 전공별 교수회의와 교육과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개정 2013.12.30.][개정 2019. 2.20]
- ③원격강의 수업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실시간 및 비실시간 원격강의를 통한 자율학습 형태를 원칙으로 한다.
- ④공학사를 수여하는 대학의 경우 공학교육인증에 필요한 교과(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한다.
- **제32조2(수업방법)** 수업방법은 출석수업 외에 현장실습수업, 방송 또는 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한 원격수업 등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신설 2017. 1.23]
- **제32조의3(국내·외 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① 국내·외 대학과의 학사학위과정의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9, 2.20]
- 제33조(이수단위) 교과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은 1학기 간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되, 실험, 실습, 실기, 체육 및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과목은 예외로 할수 있다.
- **제34조(수강신청)** ①학생은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그 학기에 이수할 과목을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개정 2021, 2.25]
- ②기타 수강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35조(학기당 취득학점)** 본교 정규 교육과정 외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인정한다. [개정 2019. 2.20]
 - 1. 계절수업은 학기당 6학점 이내로 인정하며 현장실습학점은 별도로 한다.[개정 2019.2.20.]
 - 2. 소정절차에 따라 국내·외 정규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졸업학점의 1/2범위 내에서 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8. 1. 1] [개정 2009. 9. 8]
 - 3. [삭제 2019. 2.20]
 - 4. [삭제 2010. 3.10]
 - 5. 현장실습학점의 인정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9, 2.20]
 - 6. 기타 학점에 관한 인정사항은 따로 정한다.
 - 7. 병역법에 의하여 입영 또는 복무로 휴학(군휴학자)중인 자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

- 여 취득한 학점은 총12학점 이내(학기당 3학점, 연6학점이내에서)에서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0, 3.10]
- 8. 학사과정 1학년 학생이 입학 전 국내 다른 대학과의 학점인정프로그램운영협약에 의하여 대학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2. 8. 27]
- **제35조 2(신입생 특별학점 취득)** 입학전에 대학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신설 2017. 1.23]
- 제36조(복수전공, 연계전공, 심화전공, 부전공 및 자기설계) [조명 변경 2020. 5.14.] [조명 변경 2021. 2.25.] ①복수전공은 2016학년도 입학자 까지는 36학점을 2017학년도 입학자부터는 42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에게 복수전공 학위를 수여한다. 단, 다전공 이수자의 복수전공 이수학점은 36학점으로 한다. [개정 2016.11.9.] [개정 2019. 2.20] [개정 2022. 1.26.]
- ②부전공은 2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학위증에 표시한다. [개정 2019, 2.20]
- ③[삭제 2019. 2.20]
- ④연계전공은 복수이상의 학부 또는 학과가 연계하여 제공하는 전공으로 42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에게는 연계전공 학위를 수여한다.[신설 2016.11.9.] [개정 2019. 2.20]
- ⑤ [삭제 2019. 2.20]
- ⑥ 심화전공자는 학과, 전공별로 75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9. 2.20]
- ⑦ 자기설계 이수학점은 15학점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9. 2.20] [개정 2020. 5.14.]
- ⑧ 복수전공, 연계전공, 부전공, 자기설계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9. 2.20] [개정 2020. 5.14.]
- ⑨기 취득학점 중 해당학과(전공)과목과 유사, 공통되는 과목은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21.2.25]
- **제37조(교육과정편성 및 과목코드)** [조명 변경 2020. 5.14.] ①각 학부(과)의 교과목 및 학점 배당은 고등교육법등 관계법규에 따라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 ②각 교과목은 과목코드로 구분하여 표시한다.[개정 2020. 5.14.]

제2절 학점인정, 수료 및 졸업

- **제38조(편입학,재입학자의 학점인정)** ①편입학자에 대하여는 원적학부(과)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학점을 심사하여 해당학부(과)에서 필요한 학점이나 기준학점을 인정하고, 소정의 잔여과정을 이수하게 한다.
- ②재입학자에 대하여는 취득학점은 인정하며, 소정의 잔여과정을 이수하게 한다.
- 제39조(학년수료증서) 해당 학년까지 소정의 등록과 학점을 취득할 때에는 학년수료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40조(수료학점) 각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2.20]

구분	2014학년도 이전 입학자	2015~2016학년도	2017학년도 이후 입학자
1학년	35	33	33
2학년	70	66	65
3학년	105	99	98
4학년	140	130	130

제41조(졸업학점 및 조기졸업) ①본교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30학점 이상으로 한다. 이외 졸업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다만, 제 3조에 의거 수업년한을 단축하여 졸업하고자 하는 자는 총 평점평균이 4.3이상인 경우 6학기 이상 수료 후 조기 졸업 할 수 있다.[개정 2009. 3. 1]. [개정 2015.1.19]

②조기졸업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자격

제 5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총 취득학점이 105학점 이상이며, 계절수업을 포함하여 매학기 4.0 이상으로 전체 평점평균이 4.3 이상인 자로 수업년한을 단축하여 졸업을 희망하는 자. 단, 편입학자는 조기졸업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9. 2.20]

2. 신청절차

조기졸업 대상자는 졸업희망학기(6학기 또는 7학기) 초의 소정기간에 조기졸업 신청서를 학사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결격

- 1)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발된 학생이 매 학기 이수한 교과목의 평점평균이 1개 학기라도 4.0미만 일 때, 또는 전체 평점평균이 4.3미만 일 때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 2) 조기졸업 대상자로 졸업심사 규정에 의한 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했을 경우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 4. 결격사유에 의한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조기졸업 신청자는 잔여학기를 등록이수 하여야 한다.
- ③학사학위 취득 요건 중 졸업논문(또는 대체시험)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2년의 유예기간을 거처 최종학년 수료로 한다.[신설 2015.1.19.][개정 2016.11.9.][개정 2019. 2.20]
- ④국내·외 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따른 졸업학점 인정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9. 2.20]
- 제 41조 2(졸업을 위한 전공의 이수) 2018학년도 입학자부터는 심화전공, 부전공, 복수전공, 자기설계, 연계전공 중 1개 이상의 과정(전공)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사범계열학과, 일반학과 교직과정이수자는 별도기준에 따르며 편입학자는 심화전공으로 이수한다. [신설 2019. 2.20] [개정 2020. 5.14.] [개정 2021. 2.25.]
- **제42조(졸업논문)** 졸업예정자는 최종 졸업학기에 졸업논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졸업논문은 2명 이상의 교수심의에서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정치 않는다.

단, 졸업논문 대신 실기·창작발표 및 종합시험, 실험·실습보고서로 대치할 수 있다.

제43조(졸업 및 학위)

- ①학칙이 정한 전 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별표2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학위를 수여한다.[개정 2012. 3. 1][개정 2012. 8. 27],[개정 2013.12.30]
- ②본 대학에 입학하여 수학하다가 학업을 중단한 자로서 국가, 사회 및 대학의 명예와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명예졸업증서를 수여 할 수 있다.
- **제44조(정원 외 졸업)** ①관계법령에 따라 정원 외로 입학한 자가 졸업심사에 합격하였을 때에는 정원 외로 졸업한다.
- ②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위취득대상자 중 학칙 제96조를 충족한 자에게 본 대학 총장 명의의 학

위증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2. 1.26.]

제45조(졸업시기) 졸업시기는 전기 및 후기로 할 수 있다.

제46조(졸업의 취소) 졸업이 인정된 경우에라도 과오 또는 부정행위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를 취소한다.

제3절 시험과 성적

제47조(시험) 시험은 매학기 또는 학년말에 그 기간을 수업의 범위 내에서 과목별로 시행한다. 또한 학기 중 수시고사를 실시하여 학기성적에 반영시킬 수 있다.

제48조(응시자격) 학생은 출석하여야 할 총 시간수의 4분의 3이상을 출석하지 않으면 해당교과 의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다. 단,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할 경우에는 사정을 심사하여 시험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8. 7. 1]

제49조(성적평가) ①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출석, 과제물, 시험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 ②성적평가 방법 및 기준은 과목별 또는 학부(과)별로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 ③일단 인정된 학점이라도 과오 또는 부정행위로 인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50조(성적분류) 각 과목별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D급 이상을 급제로 하고 F는 낙제로 한다.

등급	실점	평점
A+	95 - 100점	4.5
Α	90 - 94점	4.0
B+	85 - 89점	3.5
В	80 - 84점	3.0
C+	75 - 79점	2.5
С	70 - 74점	2.0
D+	65 - 69점	1.5
D	60 - 64점	1.0
F	0 - 59점	0.0

제51조(추가시험) ①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할 수 없는 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추가시험은 출석이 미달된 자는 응시할 수 없으며, 성적은 B+를 초과할 수 없다.

제 8 장 직 제

제52조(직제) 본 대학교의 직제는 따로 정한다.

제 9 장 교수회

제53조(목적) 본 대학교의 학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회를 둔다.

제54조(교수회 구성) 교수회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성한다. 교수회의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3. 1.31]

제55조(심의사항) 교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위원회에 위임, 심의할 수 있다.

- 1. 입학에 관한 사항
- 2. 졸업 및 수료에 관한 사항
- 3.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 4.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6조(개회 및 결의) 교수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 10 장 교무위원회

제57조(설치 및 구성) ①본 대학교 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 ②교무위원회의 구성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③교무위원회는 총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58조(심의사항) 교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본 대학교 기본운영 계획 사항
- 2. 대학, 대학원, 학부(과) 및 부속기관, 부설연구소 및 부설교육기관 설치와 폐지에 관한사항
- 3. 학칙 제정·변경에 관한 사항[개정 2022. 1.26.]
- 4.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9조(개회 및 결의) 교무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여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 11 장 제위원회

제60조(설치 및 운영) 총장은 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우 각종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 12 장 학생활동

제61조(학생자치기구)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배양하여 학훈에 입각한 학생 자치활동을 실천함을 목적으로 안양대학교 총학생회(이하 "총학생회"라 한다)를 두며, 총학생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2조(회원자격 및 권리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하며, 회원은 본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회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제63조(학생단체) 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생활지도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4조(학생생활지도위원회 구성)

- 1. 학생자치 활동을 지도, 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생활지도위원회를 둔다.
- 2. 학생생활지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3. 1.31]
- 3.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생지원처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처장, 총무처장, 교무처장, 입학처장, 교목실장, 여학생감, 각 단과대학장으로 한다.[개정 2013. 1.31]
- 4. 학생생활지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65조(기능) 학생생활지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회칙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2. 조직에 관한 사항
- 3. 회비 책정에 관한 사항
- 4. 예산, 결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 5. 학생 자치활동의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 6. 성희롱, 성폭력 예방과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6조(학생지도) 학생지원처장은 매 학년 초에 학생의 지도계획을 세워 학생 지도를 분담시키며, 지도교수는 학생지원처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지도하되, 학생지원처장은 총장에게 보고한 후 특별 학칙 위반자에 대하여 특별지도를 하여야 하며, 개별상담에 응하고 그 문제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66조의 2(장애학생지원)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장애학습지원체제를 구축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0. 3.10]

제67조(금지활동) 학생은 수업, 연구 등 학교의 기본 기능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제68조(학생회 효력정지) 학생회의 활동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그 효력이 정지된다.

제69조(활동의 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히 1호의 집회에 있어서의 목적, 개최, 일시, 장소 및 참가예정 인원 등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교내·외 10인 이상의 집회
- 2. 교내광고 인쇄물의 첨부 또는 배부
-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생활 후원요청 또는 시상의뢰
- 4. 외부인사의 학내초청

제70조(간행물 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물을 지도교수(지도위원)의 추천과 학생지원처장의 승인을 받아 발행하며, 간행물의 편집은 총장이 위촉하는 약간명의 지도교수(지도위원)가 지도하고, 인쇄된 간행물은 배포 전에 학생지원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1조(재입학 또는 편입학 금지) 이상의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타교에서 제적된 자를 포함한다)는 재입학 또는 편입학할 수 없으나, 정도에 따라 교무위원회에서 의결하

여 총장의 승인을 거쳐 재입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

제 13 장 등록금

제72조(납입의무) 학생은 등록 시 소정의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73조(결석 및 정학과 납입금) 등록금은 결석 또는 정학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74조(등록금의 분납) 등록금은 총장의 허가를 얻어 분납할 수 있다.

제75조(기타 등록금) 전조의 등록금 이외에 기타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76조(금액, 기일) 등록금의 금액 및 납부기일은 매 학기 초에 공시한다.

제77조(등록금 반환금지)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과오로 인한 경우 이외에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 한다.

제 14 장 장 학

제78조(장학금 지급) ①본 대학교 재학생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 및 학업에 진취성이 현저한 자에게 본 대학 설립법인의 장학금 및 기타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②장학금 지급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15 장 위탁생 및 외국인 특별학생

제79조(위탁생) ①정부기관의 재직자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재직자는 그 소속기관 장의 위탁이 있을 때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입학정원 외로 수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위탁생의 학점교류, 학점인정, 학위취득, 정원 외 신(편)입학, 학비감면 등은 본 대학교와 위탁기관 간에 체결한 협약에 따른다.

제80조(외국인 특별학생) 외국인으로서 본 대학교에 입학을 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전형을 거친 후 정원 외의 외국인 특별학생으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81조(외국인 특별학생의 이수증수여) 외국인 특별학생에 대하여는 교과이수의 정도에 따라 이수증을 수여한다.

제82조(외국인 특별학생의 증서수여) 본 대학교의 소정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학력을 검정한 후, 본 학칙 제 43 조에 규정된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83조(학칙준용) 본 대학교의 위탁생 및 외국인 학생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는 한 본 학칙에 준한다.

제 16 장 교원의 교수시간

제84조(교원의 교수시간) 본 대학교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 이상을 기준으로 매주 9 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직을 겸하고 있거나, 단일 교과목은 총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시수에 따른다.

제 17 장 공개강좌

제85조(공개강좌) 본 대학교에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일반교양, 각종 실무 또는 연구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보급을 위한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제86조(강좌과목 등) 공개강좌의 과목, 시간, 수강자격, 수강표 등 기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18 장 시간제등록생 및 학점은행제

제87조(시간제등록생 및 학점은행제) 일반 사회인을 대상으로 재교육 및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학의 강의를 개방하고, 시간(학점) 단위로 등록을 받은 후 수강을 허가하는 시간제등록 및 학점은행제를 둘 수 있다.

제88조(선발시기) 선발시기는 매 학기 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89조(자격)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라야 한다. 다만, 대학(교)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제외한다.

제90조(선발인원) 선발인원은 당해연도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하고, 학점은행제 선발 인원은 허가된 학습과목에 따른 개설정원으로 한다.

제91조(선발방법) 선발방법은 모집 시마다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92조(등록) 전형에 합격한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수강신청 하고, 수강학점에 따라 산정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93조(수강신청) 시간제등록생의 수강신청 학점은 학기당 최대 12학점까지로 하고, 연간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학점은행제 학생은 학기당 최대 24학점, 연간 42학점으로 한다.[개정 2009. 3. 1]

제94조(시간제등록생 선발 및 운영) 시간제등록생의 선발 및 운영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 다.[개정 2016.11.9.]

제94조의 2(학점은행제 운영) 학점은행제 과정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적용의 배제)를 제외한 운영규정을 준수한다.[신설 2016.11.9.]

제95조(시간제등록생의 학위수여) ①시간제등록생으로 등록하여 본 대학의 동일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이 84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②시간제등록생으로 등록한 소속학과의 전공과목 6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고, 교양과목은 소속학과의 교양과목 취득학점과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교양과목을 합한 학점이 30학점 이상이 어야 한다.

③위①,②항이 충족된 자로서 학점은행제에 의해 취득한 학점과 합산하여 140학점 이상인 경우

본 대학의 졸업학점으로 인정한다.

④시간제등록생의 학위수여를 위하여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96조(학점은행제 학위수여의 요건) ①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가 본 대학의 총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1. 고등학교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개정 2022. 1.26.]
-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학위요건에 따라 교양 30학점 이상, 전공 60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총 140학점 이상 인정받은 자[개정 2022. 1.26.]
- 3. 본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이 84학점 이상인 자[개정 2022. 1.26.]
- 4. 삭제[개정 2022. 1.26.]
- 5. 삭제[개정 2022. 1.26.]
- ② 본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에는 정규 교육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시간제등록을 통하여 이수한 학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거 평가인정받은 학습과정을 이수한 학점, 독학학위제 면제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점을 포함한다.[신설 2022. 1.26.]
- ③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제1항 1호에 의거 다른 전공 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하려는 경우는 해당 전공분야 전공학점 48학점 이상을 본교 에서 취득한 경우에 한해 총장이 수여하는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22. 1.26.]
- ④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22. 1.26.]
- 제97조(학점은행제 학위수여의 절차) 제96조의 3의 요건을 충족한 자가 본 대학의 총장이 수여 하는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학점을 인정받은 후 본 대학 학위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소정기간 내에 제출하여야한다.[개정 2013. 1.31]
- 제98조(학점은행제 학위수여) ① 제96조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자가 본 대학 총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개정 2013. 1.31][개정 2022. 1.26.]
 - 1. 대학의 장의 학위 수여를 받고자 하는 학습자는 대학의 장 학위신청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대학이 정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2. 1.26.]
 - 2. 대학의 장은 학위수여예정자 명단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제출하고 학위수여여부 확인을 하여야 한다.[신설 2022. 1.26.]
 - 3. 대학의 장은 학위번호를 부여한 후 그 명단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통보하며 학위번호는 '대학-학점-연도-일련번호'형식으로 한다. [신설 2022, 1,26.]
 - 4. 학위증서 및 증명서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학칙 제98조에 의한' 학위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신설 2022. 1.26.]
- ②제1항에 의해 학위 수여 가능한 학위의 종류 및 전공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1.31][개정 2022. 1.26.]
 - 1. 본교 정규학과 교육과정 중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전공에 한한다.[신설 2022. 1.26.]
 - 2. 전공명이 유사할 경우 유사전공심의위원회 유사성 심의를 하여야 하며 유사전공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22. 1.26.]
- ③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위는 <별표2-1>에 따른다.[신설 2022. 1.26.]

제 19 장 부속기관, 부설연구소 및 부설교육기관

제99조(부속기관, 부설연구소 및 각종사업단)[조명 변경 2020. 5.14.] ①본 대학교에 다음의 부속기관을 두며, 이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직제규정에 따른다.[개정 2017. 5.15] [개정 2020. 5.14.]

- 1. 중앙도서관
- 2. 안양대학교 언론국[개정 2020. 5.14.]
- 3. [삭제 2020. 5.14.]
- 4. 전산정보원[개정 2020. 5.14.]
- 5. [삭제 2020. 5.14.]
- 6. [삭제 2009. 3. 1]
- 7. [삭제 2012. 3. 1]
- 8. [삭제 2020. 5.14.]
- 9. [삭제 2013.10.17]
- 10.[삭제 2013. 1.31]
- ②본 대학교에 부설연구소를 두며, 이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직제규정 및 연구소 설치 운영규정에 따른다.[개정 2017. 1.23.][개정 2017. 5. 15]
 - 1. ~ 13. [삭제 2017. 1.23.]
- ③[삭제 2020. 5.14.]
- ④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속기관, 부설연구소 및 부설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⑤[삭제 2017. 5.15]
- ⑥ 본 대학교에 각종 사업단을 두며 이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직제규정에 따른다.[신설 2020. 5.14.]

제 20 장 시행세칙

제100조(세칙)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21 장 학칙변경

제101조(학칙변경) 본 대학교의 학칙변경은 변경안의 일정기간 사전공고를 거쳐 교무위원회의 및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후 총장의 재가를 거쳐 이를 확정 공포·시행한다.[개정 2013. 1.31]

제 22 장 산학협력기관

- 제102조(산학협력단) ①본교에 산학협력단을 둔다.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설치한다. ②산학협력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에 따른다.[조신설 2009. 3. 1]
- 제102조의 2(학교기업) ①본 대학교에 우일학원 정관 제73조의2 및 산학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벌률에 따른 학교기업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7. 5.15]
- ②본 대학교의 학교기업은 별표 4와 같으며, 이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7. 5.15]
- **제102조의 3(학교기업의 현장실습 활용)** ①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 또는 창업실습 교과목에 대하여 최대 13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7, 5.15]
- ②기타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에 관한 사항은 현장실습(인턴십)운영규정에 따른다[신설 2017. 5.15]

제 23 장 자체평가

- **제103조(자체평가)** ①본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학교운영의 전반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 ②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조신설 2009. 9. 8]

부 칙

- 1. (시행일) 본 학칙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199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 (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 대학교학생정원령 제2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 재입학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제13조 제1, 2항에도 불구하고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5. (입학시기에 관한 특례) 대학교학생정원령 제2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1993학 년도 제1학기에 재입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993년 4월 30일까지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6. (경과조치) 1996년 이전 입학자는 개정 전 학칙을 준용한다.
- 7. (경과조치) 1996학년도 이전에 입학하여 이 학칙 시행당시 교회음악과, 무역과, 전자계산학과, 통계학과에 재적중인 자는 음악과, 무역유통학과, 컴퓨터학과, 정보통계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본다.
- 8. (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9. (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0. (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1. (경과조치) 1998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소속은 입학당시의 학과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1998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1999학년도 입학자와 동일한 학년(1999학

년도-1학년, 2000학년도-2학년, 2001학년도-3학년, 2002학년도-4학년) 이하에 복학하는 자의 소속은 다음과 같다.

- ①기존학과가 변경된 학부전공으로 존속하는 경우 해당학부 전공에 소속한 것으로 본다.
- ②기존 학과가 폐지되었거나 주간학부 전공으로 전환되어 해당전공이 존속할 수 없는 경우 {목회학과(야), 무역유통학과(야), 관광학과(야) }는 입학당시의 소속을 원칙으로 하나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전과 기회를 우선 부여한다.
- 12. 본 개정 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3. 본 개정 학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4. 본 개정 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5.(학과,전공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이 변경 학칙 시행이전에 재적중인 학생이 편제 변동후 변경된 학과학년 및 전공학년에 복학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학과, 전공 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 ①소프트웨어학과(강화)는 컴퓨터학과
- ②영상처리학과, 컴퓨터디자인학과는 디지털미디어공학 전공, 디지털미디어디자인 전공
- ③경영학부에 재적중인 자는 경상학부로
- ④도시·환경공학부는 도시정보공학과, 환경공학과로
- ⑤정보통신·컴퓨터공학부는 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에 소속하는 것으로 본다.
- 16. 본 개정 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7. 본 개정 학칙은 200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8. 본 개정 학칙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9. 본 개정 학칙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 본 개정 학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1. 본 개정 학칙(제79조 및 제44조, 제95조, 제96조)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2. 본 개정 학칙(3장, 제5조, 제6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3. (학과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이 변경 학칙은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고 변경학 칙 시행이전에 재적중인 학생이 편제 변동 후 변경된 학과학년에 복학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학과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 ①경상학부는 경영학과, 무역유통학과로
- ②경상학부(야)는 경영학과(야)으로
- ③디지털미디어학부는 디지털미디어학과, 디지털미디어디자인학과로
- ④신문방송학과는 공연예술학과로
- ⑤음악학부에 오르간 전공은 폐지
- 24. 본 개정 학칙(별표2 학위구분표)은 2008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25. 본 개정 학칙(제35조)는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 26. 본 개정 학칙(제35조)는 2008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 27. (학과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신학부 학부제는 폐지하며, 신학전공은 신학과로, 기독교문화전공은 기독교문화학과로 변경한다.
- ②2009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편제변동 후 복학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학과, 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 28. 본 개정 학칙(별표2 학위구분표)은 2009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29. 본 개정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0. 본 개정 학칙은 2009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 31. 본 개정 학칙은 201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해당학부(과) 전공과 관련된 자격증 인정은 당해학기까지 인정한다.
- 32. 본 개정 학칙은 2011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 33. 본 개정 학칙은 2011년 7 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4. (학과신설 및 폐지, 학위명 변경)
- ①2012학년도 입학생부터 국제관계학과, 천연향장학과를 신설한다.
- ②2012학년도 입학생부터 컴퓨터공학과(야), 정보통신공학과(야), 도시정보공학과(야)는 폐지한다.
- ③공연예술학과의 변경된 학위는 200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35. 본 개정 학칙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6. 본 개정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7. (대학편제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 이 변경 학칙 시행이전에 재적중인 학생이 편제 변동 후 변경된 학과학년에 복학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대학 및 학과 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 ① (대학설치) 2013학년도부터 예술대학을 신설한다.
- ② (대학폐지) 2013학년도부터 음악대학은 폐지한다.
- ③ 2013학년도부터 음악학부, 공연예술학과, 디지털미디어디자인학과는 예술대학으로 소속된다.
- ④ 환경공학과는 2010학년도 입학생부터 환경에너지공학과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 ⑤ 천연향장학과는 2013학년도 입학생부터 화장품발명디자인학과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 ⑥ 도시행정학과는 2013학년도 입학생부터 공공행정학과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 ⑦ 해양생명공학과는 2013학년도 입학생부터 해양바이오시스템공학과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 38. 이 변경 학칙 99조의 변경내용은 직제변경 승인일로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 39. 본 개정 학칙은 2012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① 천연향장학과는 2012학년도 입학생부터 화장품발명디자인학과로 변경한다.
- ② 이 변경 학칙 시행이전에 재적중인 학생이 편제 변동 후 변경된 학과학년에 복학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대학 및 학과 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 40. 본 개정 학칙은 2013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41. 본 개정 학칙은 201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42. (학과신설 및 폐지 경과조치)
- ① 이 변경 학칙 시행이전에 재적중인 학생이 편제 변동 후 변경된 학과학년에 복학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대학 및 학과 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보나,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전과 기회를 우선 부여한다.
- ② 2014학년도 입학생부터 무역유통학과, 국제관계학과를 각각 폐지하고, 이를 통합개편하여 국제통상유통학과를 신설한다.

- 43. 본 개정 학칙은 2013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44. (학과명칭 변경 및 경과 조치) 이 변경 학칙 시행 이전에 재적중인 학생이 편제 변동 후 변경된 학과학년에 복학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학과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 ① 무역유통학과, 국제관계학과는 2012학년도 입학생부터 국제통상유통학과로 변경하여 적용하다.
- ② 디지털미디어학과는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 디지털시스템공학과로 변경한다.
- 45. 본 개정 학칙은 2013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46. 본 개정 학칙은 2014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47. (학과신설 및 전공폐지 경과조치)
- ① 본 개정 학칙은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② 이 변경 학칙 시행이전에 재적중인 학생이 편제 변동 후 변경된 학과학년에 복학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학과 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 ③ 음악학부 작곡전공 폐지
- ④ 국제통상유통학과(야) 신설
- ⑤ 정보통계학과(야) 신설
- ⑥ 정보통신공학과(야) 신설
- ⑦ 도시정보공학과(야) 신설
- 48. 본 개정 학칙은 2014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 49. 본 개정 학칙은 2015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본 개정 학칙(제35조,40조,41조①항)은 2015년 입학자부터 시행하고, 학칙(제41조 ③항)은 2016년 2월 졸업자부터 시행한다.
- 50. 본 개정 학칙은 2015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 51. 본 개정 학칙은 2015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2016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2. (학사조직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 ① 본 개정 학칙은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② 폐지되는 인문대학, 이공대학, 예술대학, 문리과학대학, 교양대학은 2019학년도까지 존속한다.
- ③ 2017학년도 이전에 관광학부로 입학하여 전공배정 이전인 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어문화학부 또는 관광경영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보고 언어문화학부를 선택할 경우 영미언 어문화전공으로 우선 배정한다.
- ④ 2017학년도 이전에 학과로 입학하여 전공배정 이전 학년으로 재적할 경우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러시아어과, 중국어과는 인문예술대학 언어문화학부에 음악학부, 공연예술학과는 인문예술대학 예술학부에 컴퓨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정보통계학과, 디지털시스템공학과, 컴퓨터학과는 스마트창의융합대학 ICT융합공학부에, 디지털미디어디자인학과, 화

장품발명디자인학과는 스마트창의융합대학 디자인발명창업학부에 도시정보공학과, 환경에너지 공학과, 해양바이오시스템공학과는 스마트창의융합대학 도시환경바이오공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보고 전공 배정 시 아래 각 호에 따라 소속을 변경한다.

- 1. 신학대학 신학과, 기독교문화학과에 재적중인 자는 신학대학 신학과로 소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2.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러시아어과, 중국어과에 재적중인 자는 인문예술 대학 언어문화학부 국어국문학전공, 영미언어문화전공, 러시아언어문화전공, 중국언어문화전 공으로 소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3. 인문대학 유아교육과에 재적중인 자는 인문예술대학으로 소속을 변경한다.
- 4. 예술대학 음악학부, 공연예술학과에 재적중인 자는 인문예술대학 예술학부 음악전공, 공연예술전공에 소속된 것으로 본다.
- 5. 사회과학대학 경영학과, 국제통상유통학과에 재적 중인 자는 글로벌경영학과로 소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6. 사회과학대학 관광학부 관광경영전공에 재적중인 자는 관광경영학과로 소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7. 사회과학대학 관광학부 관광영어통역전공에 재적 중인 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인문예술대학 언어문화학부 영미언어문화전공 또는 사회과학대학 관광경영학과로 소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8. 이공대학 정보통계학과에 재적중인 자는 스마트 창의융합대학 ICT융합공학부 통계데이 터과학전공으로 소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9. 이공대학 컴퓨터공학과에 재적중인 자는 스마트창의융합대학 ICT융합공학부 컴퓨터공학 전공으로 소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10. 이공대학 정보통신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에 재적 중인 자는 스마트창의융합대학 ICT 융합공학부 정보전기전자공학전공으로 소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11. 이공대학 디지털시스템공학과, 디지털미디어학과에 재적중인 자는 스마트창의융합대학 ICT융합공학부 소프트웨어전공으로 소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12. 이공대학 식품영양학과에 재적중인 자는 스마트창의융합대학으로 소속을 변경한다.
- 13. 이공대학 도시정보공학과, 환경에너지공학과, 문리과학대학 해양바이오시스템공학과에 재적중인 자는 스마트창의융합대학 도시환경바이오공학부 도시정보공학전공, 환경에너지공학전공, 해양바이오공학전공으로 소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14. 예술대학 디지털미디어디자인학과, 이공대학 화장품발명디자인학과에 재적중인 자는 스마트창의융합대학 디자인발명창업학부 디지털미디어디자인전공, 화장품발명디자인전공으로 소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15. 문리과학대학 공공행정학과는 사회과학대학으로 소속을 변경한다.
- 16. 문리과학대학 컴퓨터학과에 재적중인 자는 스마트창의융합대학 ICT융합공학부 융합소 프트웨어전공으로 소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17. 문리과학대학 관광경영학과에 재적중인 자는 사회과학대학 관광학과로 소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2016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2017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2017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2019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2.(학사조직 개편에 따른 경과 조치)학부로 선발된 2018학년도 입학생과 2019학년도 입학생이 전공 배정 이전에 휴학하여 2020년 이후에 복학 할 경우 본인이 원하는 전공으로 배정한다.

부 칙

1.(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2020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2021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2021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202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2. 2022학년도부터 공공행정학과, 관광학과, 융합소프트웨어전공은 모집 정지하고

뷰티메디컬디자인학과, 게임콘텐츠학과(강화), 스포츠지도학과(강화), 실용음악과(강화), AI융합학과를 신설한다.

- 3. (학사조직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 ① 인문예술대학과 스마트창의융합대학은 2024학년도까지 존속한다.
- ② 학부제로 입학하여 전공 배정 이전인 자는 소속 학부의 원하는 전공으로 배정한다.
- ③ 2022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의 소속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인문예술대학 언어문화학부 국어국문학전공, 영미언어문화전공, 러시아언어문화전공, 중국언어문화전공에 재적 중인 자는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영미언어문화학과, 러시아언어문화학과, 중국언어문화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 2. 인문예술대학 유아교육과에 재적 중인 자는 인문대학 유아교육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 3. 인문예술대학 예술학부 음악전공, 공연예술전공에 재적 중인 자는 예술체육대학 음악학과, 공연예술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 4. 스마트창의융합대학 ICT융합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 정보전기전자공학전공, 통계데이터 과학전공, 소프트웨어전공, 스마트시티공학전공(강화)에 재적 중인 자는 창의융합대학 컴퓨터공학과, 정보전기전자공학과, 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과, 소프트웨어학과, 스마트시티공학과 (강화)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 5. 스마트창의융합대학 도시환경바이오공학부 도시정보공학전공, 환경에너지공학전공, 해양바이오공학전공(강화)에 재적 중인 자는 창의융합대학 도시정보공학과, 환경에너지공학과, 해양바이오공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 6. 스마트창의융합대학 디자인발명창업학부 디지털미디어디자인전공, 화장품발명디자인전공에 재적 중인 자는 예술체육대학 디지털미디어디자인학과, 화장품발명디자인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 7. 스마트창의융합대학 식품영양학과에 재적 중인 자는 창의융합대학 식품영양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 ④ (학과(부) 모집정지에 따른 경과 조치)
- 1. 모집 정지되는 학과(부), 전공의 존속 기한은 모집 정지 시점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소속 학생이 있을 경우 연장할 수 있다.
- 2. 모집 정지되는 학과(부), 전공의 존속 기한 종료 이전이라도 학생이 원할 경우 타 학과 (부)로 전과를 허용한다. 단, 전과에 관한 사항은 전과 규정을 준용한다.
- 3. 모집 정지되는 학과(부), 전공의 존속 기한 종료 이후에도 재적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유 사 학과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게 허용하고 전공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2022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학부(과)입학정원표

[개정 2021. 4.27.][개정 2022. 1.26.][개정 2022. 5.10.]

대학	학부(과)명	전공	20 20	15 16	20	14	20	13	20	12	20	11
			주	야	주	야	주	야	주	야	주	야
	신학과		35		40		40		40		40	
വചാ വചാ	기독교문화학과		35		40		40		40		40	
신학대학	사범계 기독교교육과		30		30		30		30		30	
	소 계		100		110		110		110		110	
	국어국문학과		35		35		35		35		35	
	영어영문학과		35		35		35		35		35	
	러시아어과		35		35		35		35		35	
인문대학	중국어과		35		35		35		35		35	
	사범계 유아교육과		35		35		35		35		35	
	소 계		175		175		175		175		175	
		피아노전공	1.0		1.0		110		110		1	
예술대학	음악학부	성악전공 관현악전공 작곡 ¹⁾	60		70		70		70		70	
	공연예술학과		35		42		42		1		1	
	디지털미디어디자인학과		35		40		40					
	소 계		130		152		152		70		70	
	경영학과		40	30	40	30	40	30	40	30	40	30
	무역유통학과		•				35		35		35	
	국제관계학과						30		30			
사회과학	관광학부	관광경영전공 관광영어통역전공	70		70		70		70		70	
대학	행정학과		35	30	35	30	35	30	35	30	35	30
	국제통상유통학과		34	33	65							
	공연예술학과 ⁴⁾								42		37	
	소 계		179	93	210	60	210	60	252	60	217	60
	정보통계학과		37	33	50		50		50		50	
	정보통신공학과		37	33	50		50		50		40	30
	컴퓨터공학과		40		50		50		50		40	30
	도시정보공학과		37	33	50		50		50		45	30
	환경에너지공학과		40		50		50		50		50	!
	전기 · 전자공학과		40		50		50		50		50	
이공대학	디지털미디어학과 ²⁾		*		40		40		40		40	
	디지털시스템공학과		40				1		1		1	
	식품영양학과		40		40		40		40		40	
	화장품발명디자인학과		30		30		30		30		1	İ
	디지털미디어디자인학과5)		İ				1		40		40	
	소 계		341	99	410		410		450		395	90
	도시행정학과 ³⁾		1						35		35	
문리과학 대학	공공행정학과		35		35		35		1		1	
	관광경영학과		35		35		35		35		35	ļ
	컴퓨터학과		35		35		35		35		35	İ
	해양생명공학과 ³⁾		·····				ļ		35		35	
대학	: 애앙생덩동막파~			:	1 3		4		+	į	.1	·····
대학			35		35		35				;	1
대학	해양하이오시스템공학과 소 계		35 140		35 140		35 140		140		140	
대학 	해양바이오시스템공학과		35 140 1,065	192	35 140 1,197	60	35 140 1,197	60	140 1,197	60	140 1,107	150

- 1) 음악학부 작곡전공은 2014학번까지만 선발
- 2) 디지털미디어학과 2015학년도부터 디지털시스템공학과로 학과명 변경
- 3) 도시행정학과, 해양생명공학과는 2013학년도부터 공공행정학과, 해양바이오시스템공학과로 학과명 변경
- 4) 공연예술학과는 2013학년 입학자부터 사회과학대학에서 예술대학으로 소속대 학 변경
- 5) 디지털미디어디자인학과는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이공대학에서 예술대학으로 소속대학 변경

대학	학부(과)	 전공	20	21	20	20	20	19	20	18	20	17
내약	약구(과)	신 등	주	야	주	야	주	야	주	야	주	야
	신학과		52		52		52		52		52	
신학 대학	사범계 기독교교육과		30		30		30		30		30	
		소계	82		82		82		82		82	
		국어국문학전공	30		30						30	
	언어문화학부	영미언어문화전공	30		30		120		120		30	
	한의단화역구	러시아언어문화전공	30		30		120		120		30	
인문 예술		중국언어문화전공	30		30						30	
대학 대학	사범계 유아교육과		35		35		35		35		35	
	예술학부	음악전공	43		43		43		43		43	
	에돌익구	공연예술전공	22		22		22		22		22	
		소계	220		220		220		220		220	
	글로벌경영학과		60	63	60	63	60	63	60	63	60	63
	행정학과		35	30	35	30	35	30	35	30	35	30
사회	공공행정학과(강화)		30		30		30		30		30	
파악 대학	과학 대학 관광경영학과		40		40		40		40		40	
	관광학과(강화)		22		22		22		22		22	
		소계	187	93	187	93	187	93	187	93	187	93
		컴퓨터공학전공	40		40						40	
		정보전기전자공학전공	80	33	80	33	195	66	195	66	80	33
	ICT 융합공학부	통계데이터과학전공	35	33	35	33	195	00	195	00	35	33
	ICI 8859T	소프트웨어전공	40		40						40	
		융합소프트웨어전공(강화)	35		35		35		35		35	
스마트		스마트시티공학전공(강화)	35									
창의 융합	디자인발명	디지털미디어디자인전공	30		30		65		65		30	
대학		화장품발명디자인전공	35		35		00		00		35	
		도시정보공학전공	40	33	40	33	00	33	00	33	40	33
	도시환경바이오공학부	환경에너지공학전공	40		40		80		80		40	
		해양바이오공학전공(강화)	35		35		35		35		35	
	식품영양학과		40		40		40		40		40	
		소계	485	99	450	99	450	99	450	99	450	99
	ネゴ		974	192	939	192	939	192	939	192	939	192
	총계		1,1	.66	1,1	.31	1,1	.31	1,1	.31	1,1	.31

대학	학 학부(과)		20)23	20	22
내약		약구(과)	주	야	주	야
		신학과	29		30	
신학 대학	사범계	기독교교육과	28		30	
		소계	57		60	
		국어국문학과	30		30	
		영미언어문화학과	30		30	
인문	ĭ	러시아언어문화학과	28		30	
대학		중국언어문화학과	30		30	
	사범계	유아교육과	35		35	
		소계	153		155	
		공연예술학과	22		22	
		음악학과	38		40	
	디	지털미디어디자인학과	30		30	
	ই	장품발명디자인학과	32		32	
예술체육	뷰티메디컬디자인학과				20	
대학	게임콘텐츠학과(강화)				30	
		실용음악과(강화)	21		22	
	ے ۔	포츠지도학과(강화)	24		30	
	체육학과(강화)					
	소계		233		226	
		글로벌경영학과	60	50	60	59
사회 과하	사회 행정학과 과학 대학 관광경영학과		35	26	35	28
			40		40	
	소계		135	76	135	87
		컴퓨터공학과	40		40	
		정보전기전자공학과	80	28	80	31
	통:	레데이터사이언스학과 -	35	28	35	31
	소프트웨어학과				40	
창의	도시정보공학과			28	40	31
융합	환경에너지공학과				40	
대학	식품영양학과				40	
	AI융합학과				20	
	스마트시티공학과(강화)				35	
	해역	23		25		
		소계	393	84	395	93
		총계	971	160	971	180
		٥/٦١	1,1	L31	1,1	51

〈별표 2〉

학부(과)별 학위구분표

[개정 2021. 2.25.] [개정 2022. 1.26.]

대학	학부(과)명	학위명
	신학과	신학사
신학대학	기독교문화학과	신학사
	기독교교육과	문학사
	국어국문학과	문학사
	영어영문학과	문학사
인문대학	러시아어과	문학사
	중국어과	문학사
	유아교육과	문학사
	음악학부	음악학사
예술대학	공연예술학과	예술학사
	디지털미디어디자인학과 *	예술학사
	경영학과	경영학사
	무역유통학과**	무역학사
가 취 귀 차.레 차.	관광경영전공**	관광학사
사회과학대학	관광영어통역전공**	관광학사
	행정학과	행정학사
	국제통상유통학과	국제통상학사
	정보통계학과	이학사
	정보통신공학과	공학사
	컴퓨터공학과	공학사
	도시정보공학과	공학사
시고미창	환경에너지공학과	공학사
이공대학	전기 · 전자공학과	공학사
	디지털미디어학과	공학사
	디지털시스템공학과	공학사
	식품영양학과	이학사
	화장품발명디자인학과	공학사
	도시행정학과	행정학사
	공공행정학과	행정학사
ㅁ기기청네청	관광경영학과**	관공학사
문리과학대학	컴퓨터학과	공학사
	해양생명공학과	공학사
	해양바이오시스템공학과	공학사

^{*} 디지털미디어디자인학과 2012학년도 입학자까지는 공학사로 표기

^{**} 무역유통학과, 관광경영전공, 관광영어통역전공, 관광경영학과는 2007학년도 입학자까지 경영학사로 표기

[2017학번부터]

대학	학부(과)		전공	학위명
신학대학	신학과			신학사
신약대약 	사범계	기독교교육과		문학사
			국어국문학전공	문학사
	*1.11	in asa	영미언어문화전공	문학사
	언어	문화학부	러시아언어문화전공	문학사
인문예술대학			중국언어문화전공	문학사
	사범계	유아교육과		문학사
	تہ	I스윙 H	음악전공	음악학사
	4	술학부	공연예술전공	예술학사
	글로'	벌경영학과		경영학사
	행정학과			행정학사
사회과학대학	공공행정학과(강화)			행정학사
	관광경영학과			관광경영학사
	관광학과(강화)			관광학사
	ICT 융합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	공학사
			정보전기전자공학전공	공학사
			통계데이터과학전공	이학사
			소프트웨어전공	공학사
			융합소프트웨어전공(강화)	공학사
z 메드 카 이 이 회 메 최			스마트시티공학전공(강화)*	공학사
스마트창의융합대학	도) 의 신간	카며 카어 차 ㅂ	디지털미디어디자인전공	공학사
	나사인	발명창업학부	화장품발명디자인전공	공학사
			도시정보공학전공	공학사
	도시환경	바이오공학부	환경에너지공학전공	공학사
			해양바이오공학전공(강화)	공학사
	식품	-영양학과		이학사

^{*} 스마트시티공학전공(강화)은 2021학년도 신설

[2022학번부터]

대학	학과명	학위명
यो दीनो दी	신학과	신학사
신학대학 -	기독교교육과	문학사
	국어국문학과	문학사
	영미언어문화학과	문학사
인문대학	러시아언어문화학과	문학사
	중국언어문화학과	문학사
	유아교육과	문학사
	음악학과	음악학사
	공연예술학과	예술학사
	디지털미디어디자인학과	공학사
세스레이데칭	화장품발명디자인학과	공학사
예술체육대학 -	뷰티메디컬디자인학과	뷰티디자인학사
	게임콘텐츠학과(강화)	게임콘텐츠학사
	스포츠지도학과(강화)	체육학사
	실용음악과(강화)	음악학사
	글로벌경영학과	경영학사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행정학사
	관광경영학과	관광경영학사
	컴퓨터공학과	공학사
	정보전기전자공학과	공학사
	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과	이학사
	소프트웨어학과	공학사
크 A O 최 비 최	도시정보공학과	공학사
창의융합대학 -	환경에너지공학과	공학사
	식품영양학과	이학사
	AI융합학과	공학사
	스마트시티공학과(강화)	공학사
	해양바이오공학과(강화)	공학사

^{*} 뷰티메디컬디자인학과, AI융합학과, 게임콘텐츠학과(강화), 스포츠지도학과(강화), 실용음악과(강화)는 2022학년도 신설

[연계전공]

전공명	학위명
창업전공	창업학사
지능정보콘텐츠전공	이공학사
스마트공간정보전공	공학사
빅데이터리터러시디자인전공	이학사
소셜데이터사이언스전공	소셜데이터사이언스학사

<별표 2-1>

학점은행제 학위구분표

[신설 2022. 1.26.]

전공명	학위명
경영학	경영학사
관광경영학	경영학사
행정학	행정학사
신학	신학사
연극학	예술학사
관현악	음악학사
성악	음악학사
피아노	음악학사
작곡	음악학사

〈별표 3〉

계약학과 정원

[개정 2017. 5.15]

대학	학부(과)	유형	입학구분	입학정원	학위명
사회과학대학	공공행정학과(Ⅲ)	재교육형	편입	20	행정학사
스마트창의융합대학	화장품발명디자인공학과	재교육형	편입	20	공학사

〈별표 4〉

안양대학교 학교기업

[신설 2017. 5. 15]

명칭	사업종목	연계학과	참여학과	소재지
AY COSMETIC (에이와이 코스메틱)	디자인,화장품,생 활용품, 전자상거 래업, 통신판매업	화장품발명디자 인전공	디지털미디어디자 인전공,글로벌경영 학과,정보전기전자 공학전공	(1402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덕로 37번길 22 안 양대학교 창의융합산학 관

- 1) '연계학과'라 함은 학교기업을 주관하는 학과로서, 학교기업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 등을 비롯한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수행하는 학과임
- 2) '참여학과'라 함은 학교기업에 참여하는 학과로서 연계학과와의 융합교육과정 개발, 기업에 필요한 기술 및 인력 제공 등과 같은 제반 사항을 협력하는 학과임

<별지 1호> [개정 2020. 5.14.]

제 호

학위증

성명: ○ ○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여 학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다음과 같이 학위를 수여함.

전 공: ○○학과<또는 전공> ○○트랙 (○○학사)

복수전공 : ○○학과<또는 전공> (○○학사) 다 전 공 : ○○학과<또는 전공> (○○학사) 연계전공 : ○○학과<또는 전공> (○○학사)

부 전 공 : ○○학과<또는 전공>

년 월 일

안양대학교 총장 ○○○박사 ○○○

학위번호 : 안양대○○○(학)○○○

<별지 2호>

제 호

학위증

성명: ○ ○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9조 및 학칙 제9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학위를 수여함.

전공 및 학위명 : ○○ 전공, ○○학사

년 월 일

안양대학교 총장 〇〇〇

학위번호 : 안양대 학점 ○○-○○